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증권투자신탁(UH) [채권]

- **변경 사유** : ①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
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
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
 ④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0년 8월 21일

□ **변경 내용**

| 항 목   | 정정사유                  | 정 정 전                   | 정 정 후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요약정보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투자비용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<u>2020. 6. 30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4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<u>2020. 8. 7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용전문인력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| <u>2019. 11. 30. 기준</u> | <u>2020. 7. 31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| 오기 정정 및 미기재 클래스 추가 기재 | -                       | 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/I, W 클래스 추가</u> |
| 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가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| <u>2019. 11. 30. 기준</u> | <u>2020. 7. 31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나. 운용중인<br>집합투자기구에 관한<br>사항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| <u>2019. 11. 30. 기준</u> | <u>2020. 7. 31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br>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<br>및 각 종류별 특징      | 오기 정정 및 미기재 클래스 추가 기재 | -                       | 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/I, W 클래스 추가</u>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<br>투자위험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<br>적합한 투자자 유형 | 제 4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| <u>표준편차 : 5.78%</u>     | <u>표준편차 : 6.43%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 |   |   |  |
|--|---|---|--|
|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/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        | <p>제 4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/p> | <p>=<br/>=</p>  | <p><u>2020. 8. 7. 기준</u><br/><br/><u>2020. 6. 30. 기준</u></p>   |
| 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br/>나. 과세<br/>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 | 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납입요건<br/>가입기간 5년 이상, <u>연 1,800 만원 한도</u><br/><u>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</p> <p>공제제도<br/>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br/>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br/>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</p> | <p>납입요건<br/>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<br/><u>가. 연 1,800 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<br/>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</u><br/>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</p> <p>공제제도<br/><u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</u></p> |

|  |  |  |  |
|--|--|--|--|
|  |  | <p>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br/>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<br/>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<br/>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<br/>금액을 합산하여 연<br/>700 만원 한도로 12%에<br/>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<br/>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<br/>공제합니다. 다만,<br/>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<br/>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<br/>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<br/>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/>※ 지방소득세 별도</p> |  |
|--|--|--|--|

###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재무정보              |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<br>따른 갱신 | - | <u>2020. 8. 7. 기준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<br>현황 |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<br>따른 갱신 | - | <u>2020. 8. 7. 기준</u> |
| 3. 집합투자기구의<br>운용실적   |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<br>따른 갱신 | - | <u>2020. 8. 7. 기준</u> |

###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<br>사항<br>가. 회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| <u>2019. 11. 30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2020. 7. 31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<br>사항<br>나. 주요 업무<br>(3) 업무위탁<br>② 수익자 명부 작성<br>업무의 위탁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<br>변경 사항 반영 |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  | <u>전자등록기관</u>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<br>사항<br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<br>요약 재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| <u>제 21 기(2018.12.31)</u><br><u>제 20 기(2017.12.31)</u> | <u>제 22 기(2019.12.31)</u><br><u>제 21 기(2018.12.31)</u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2019. 11. 30. 기준 | 2020. 7. 31.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**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**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br>가. 수익자총회 등<br>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|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  |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다.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| <p>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|



|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 | <p><u>〈신 설〉</u></p> | <p>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</p> <p>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</p> <p>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</p> <p>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</p>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br>가. 정기보고서<br>(2) 자산운용보고서<br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| 예탁결제원<br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| 전자등록기관<br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 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br>나. 수시공시<br>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           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| 한국예탁결제원                     | 전자등록기관  |

**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**

| 종합소득금액<br>(총급여액)       | 세액공제 대상<br>납입한도<br>(퇴직연금 포함) | 50세 이상<br>세액공제 대상<br>납입한도<br>(퇴직연금 포함) | 세액공제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4천만원 이하<br>(5.5천만원 이하) | 400만원<br>(700만원)             | 600만원<br>(90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|
| 1억원 이하<br>(1.2억원 이하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2%   |
| 1억원 초과<br>(1.2억원 초과)   | 300만원<br>(700만원)             |  |       |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  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